

수입식품등검사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9-35호(1999.6.)-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예규로 규정 운영하던 수입식품등검사지침을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9-35호로 규정, '99. 7. 1부터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고시전문을 소개한다.

- 수입자가 수입신고기관외의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수입한 식품의 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의 검사신청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제9조제2항)
- 표시기준, 허위표시에 대한 확인규정에 경미한 위반 사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9종을 규정하고 한글표시가 전혀 없는 수입식품은 신고서류를 반려 토록 규정(제10조)
- 부적합한 수입식품의 처리규정에 선별이 가능한 식품은 수입자가 선별이후 재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하였던 수입식품은 3회이상 정밀 검사를 하여 적합한 경우에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제11조)
- 수입식품의 목적외 용도사용승인범위에 유통전문 판매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를 당초 수입한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수입신고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해당지방청 또는 검역소장에게 승인을 받은 이후 다른 식품제조업소등에 식품원료로 판매, 임대, 재계약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제12조)

수입식품검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검사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형평성, 공정성,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전수입신고의 처리)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하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수입신고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수입식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신고한 날을 민원처리 기산일로 보아(이 경우 4~5일 이전 신고한 것은 3일전을 기산일로 본다) 서류심사를 완료하고, 보세구역등에의 입고 즉시 서류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수입식품등(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정밀검사 대상은 검체채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입고사실의 확인은 전화, 모사전송(FAX), 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예정일 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은 수입신고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서류접수시 이행사항)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식품공전 제 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용어의 정의, 32) 식품 원재료 분류상의 식품원재료와 3. 원료등의 구비 요건 1). (7) ②의 식품의 부원료로서 최소량만을 사용할 수 있는 동·식물 및 기타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 중 한약재로도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시마다 수입업소를 관할하는 영업허가(신고)기관에서 사후관리도록 수입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동일사 동일식품등의 인정범위) ①농산물 중 제품명을 세분(예; 대두 SOYBEAN, BLACK BEAN, WHITE BEAN, 밀 SOFT WHEAT, HARD RED WHEAT, DARK NORTH SOFT WHEAT 등)하여 수입신고 하더라도 시행규칙 제 11조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동일사 동일식품등의 조건에 부합되고 검사항목이 동일할 경우 동일사 동일식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농·임산물을 포장장소의 번지까지 일치할 경우 동일사 동일식품으로 인정한다.

제6조(정밀검사용 검체의 채취기준) 정밀검사를 위한 검체의 채취는 식품공전 제2. 검체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기구 또는 용기·포장으로서 재질 및 바탕 색상이 같으나 단순히 용도·모양·크기 또는 제품명 등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성이 있는 것을 검체로 할 수 있다. 다만, 재질 및 바탕색이 같지 않은 셋트의 경우에는 판매단위인 셋트

별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제7조(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시행규칙 제

11조 [별표 6] 1.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반침대로 사용하는 끈·챙반·잔받침대
2.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
3.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는 기구류 또는 수출 후 반송되어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기구류
4. 무상공급 목적으로 무환으로 수입하는 “선천성 대사이상환자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단, “선천성 대사이상환자용”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의 문구를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제8조(식품등의 검사)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행하여야 한다.

1. “신선한 식품류”를 신속하게 검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정밀검사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등 가온보존 검사대상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별도지시에 의해 실시하는 검사는 제외한다.
3.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는 별표 1 수입농산물의 분류에 따른 별표 2 농산물잔류농약검사서에 의하여 검사한다.
가.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우선순위 등급 중 지

- 방청 구분없이 A군 농산물을 1순위, B군 농산물을 2순위 농산물을 별표 3 잔류농약 동시다성분 분석법으로 검사한다.
- 나. A군 농산물 2~3순위와 B군 농산물 3순위는 지방청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검사한다.
4. 식품,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한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는 별표 4 식품등에 대한 품목별 중점검사항목에 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 제 9 조(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의뢰)** ①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수입자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국립검역소(이하 “지방청 또는 검역소”라 한다)외의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하는 경우에는는 식품의 유형 및 시험하여야 할 검사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수입자는 지방청 또는 검역소 외의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의뢰신청서를 당해 식품등의 수입신고서와 함께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시기준·허위표시등의 확인 등)** ①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수입식품등의 검사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관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동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 이 경우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II. 1. 8. 파. (2)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3개미만이어야 한다.
 - 가. 포장지 재질 미표시
 - 나. 보존 및 보관상 주의사항 미표시
 - 다. 식품의 유형 미표시
 - 라. 착향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착향료 미표시
 - 마.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 미표시
 - 바. 냉장, 건조, 분말, 살균, 멸균제품으로 표시하여야 할 경우 미표시
 - 사. 사용농도 및 희석배수 미표시
 - 아. 열량표시가 상이한 경우
 - 자. 표시기준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할 경우
-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사항이 당해 식품등의 포장지 등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식품등의 신고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 제11조(부적합한 수입식품등의 처리)** ①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선한 식품류”이 외의 농·임산물과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등의 수산물이 조금 부패되거나, 변질 또는 폐사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이를 선별토록 하여 선별된 물량에 한하여 재수입 신고를 할 수 있다.
- ②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결과 부적합된 동일사 동일식품등 또는 유해물질 등이 함유되어 문제가 제기되었던 수입식품등에 대한 정밀검사는 3회이상 검사결과 적합한 경우에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2조(수입식품등의 목적외 용도사용 승인)** ①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포장류제조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별표 6] 2. 마목의 규정에 의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당초 수입한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용기·포장류제조업소에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판매, 일시적교환, 임대 또는 재계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단, 양곡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자신이 수입한 원료를 기존 생산품목이나 신개발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원료를 동일 법인내의 여러 제조·가공업소에 공급하는 경

우,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받아 식품등수입판매업자가 판매용으로 수입한 원료를 자사제품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재수출하는 경우, 식용외 다른 용도(공업용 또는 사료용)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외 용도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이 발급한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 사본
2.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용기·포장류제조업소에 판매, 일시적 교환, 임대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물량 및 사유서
3. 당해 원료를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용기·포장류제조업소에 판매, 일시적 교환, 임대 또는 재계약하는 자 및 구입, 교환 또는 임차하는자의 영업허가(신고)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4.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목적외 용도사용을 승인하는 기관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체를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5. 위탁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입한 경우에 한다)

②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를 목적외 용도사용으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승인된 영업소재지 관할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주기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세관장요건확인 제외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검사 및 관리등) ①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관세법에 의거 세관의 통관단계에서 수입요건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하여는 세관의 수입신고필증 교부내역을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수입신고필증 교부내역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2일이내에 수입자에게 수입신고 및 검사를 받은 후 유통·판매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전화·모사전송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수입하는 자는 세관 통관절차 전이나 완료 즉시 해당 제품의 통관장소 및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으로부터 식품등수입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후 유통·판매하여야 한다.

④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수입신고 받은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하여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사후요건확인품목인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수입신고 및 검사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사항) ①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유로하여 검사가 완료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의 발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은 전산기기로 출력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기기 또는 통신망의 장애로 전산기기에 의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지방청 시험분석실에서는 접수순서를 이유로 검사가 완료된 품목에 대한 결과 통보를 지연하여서는 아니되며, 검사항목이 많거나 검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품목에 대한 검사가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검사항목이 적은 품목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검사가 진행중인 식품등의 검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 먼저 검사한 후 그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제1999-35호, '99.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가 진행중인 수입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이 고시 시행전에 수입신고를 하여 이 고시 시행당시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수입식품등검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훈령 제40호,

'98.12.31)에 의한다.

②제5조제2항과 제8조제3호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호는 2000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폐지규정) 수입식품등검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훈령 제40호, '98.12.31)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의뢰 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		업소명
	업소소재지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검사의뢰내용			
제품명			
식품의유형			
신고수량			
신고증량			
신고금액			
제조국 또는 생산국 및 제조사명			
검사의뢰하고자 하는 타 식품위생검사기관명			
<p>수입식품등검사지침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타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신청합니다.</p>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립○○검역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검사에 필요한 자료			

64654-00312 민
'99. 4. 29. 승인

가로 210mm×297mm
일반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